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 9. 27.(수)		
사업명/신청위치	G-SQUARE 개발사업 / 구로구 832번지외 3필지		
의결번호	2017-안전영향1-1	심의결과	조건부 의결
<p>[심의 내용]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 심의</p> <p>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안전영향평가 결과 확정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구조안전·굴토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되도록 반영내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허가 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< 구조안전 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Belt Truss의 위치 및 계획이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하고, 코어월에 대한 응력비의 여유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 바람. ○ 저층부 옥상 하중 계획에서 펌프카, 크레인 등 중장비 하중을 검토하고 필요시 조치하기 바람. ○ Delay Joint 영역 중 X·Y축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은 Joint 상세가 별도 필요한지 검토 후 반영하기 바람. ○ 콘크리트 강도 49MPa에 대한 폭렬붕괴 방지(저감) 등을 면밀히 재검토 바람. ○ 코어월과 수평부재와의 접합(정착)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기 바람.(층별, 코어월 두께별) ○ SRC 기둥의 스킨바 등 구속효과에 대해 재검토하고, 상세(용접 제외)에 대한 입체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조치 바람. ○ 지붕층의 토사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때 시공 시 적재높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바람. ○ 역타에 의한 시공하중을 고려하는 구간에 대해 구조도면에 명확히 표기 바람. ○ 구조도면에 대해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날인하기 바람. ○ 풍동실험의 조치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, 구조설계 전체와 연관해서 작성하기 바람.(예로서, 풍동실험의 조건 변경으로 인해 구조물 전체의 사용성과 부재의 변경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 09. 2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 9. 27.(수)		
사업명/신청위치	G-SQUARE 개발사업 / 구로구 832번지외 3필지		
의결번호	2017-안전영향1-1	심의결과	조건부 의결
〔심의 내용〕 안전영향평가결과 확정 심의			
< 구조안전 분야 >(계속)			
○ 최종 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하중의 정리를 명확히 하고, 실시설계 시 최종 도면에 반영하여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하기 바람.			
○ 대지 단차로 인해 Top-down 공사 시 시공하중을 고려해야 할 구역에 대해 실시설계 시 시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기 바람.			
< 지반안전 분야 >			
○ 기초 시공 시 설계지지력 확인을 위한 시험시공 횟수를 제시하기 바람.			
○ CIP 시공시 천공 깊이가 최대 32m이며 정형화되지 않은 지역으로 수직도 1/200 이상 유지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기 바람.			
○ 강우량 산정에서 최근의 서울지역 기왕 최대강우량 자료를 반영하기 바람.			
○ 계측관리 공사시방서의 허용 침하량(철근, 철골구조) 관리기준을 100mm에서 25mm로 변경하기 바람.			
○ 흙막이 가시설 도면 중 유압잭 상세도에 잭 규격을 표기하기 바람.			
○ 암석/암반 특성을 평가하여 기초부분 및 흙막이 설계에 활용토록 설명하기 바람.			
○ 지하수위의 영향선도를 작성하여 활용하기 바람.			
○ 수방대책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기 바람.			
○ 굴착에 대한 침하 영향선도를 작성하기 바람.			
○ 유지관리 단계에서 지하수 관리(배수형, 비배수형)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과를 적용하기 바람. 끝.			

2017. 09. 27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